2019년도 제12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 2019. 7. 25.(목요일), 10:00

o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2명 참석

- 심의위원 : 최승수 위원(분과위원장), 강호갑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112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142건(안건번호 제2019-78229호~79244호)

- 회의결과 : 안건번호 제2019-78229호는 민원인이 만든 이미지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가 불명확한 점, 게시자가 이미지를 스스로 삭제하여 더 이상 전송되고 있지 않는 점, 상품판매만을 위해 이미지를 이용하여 해당 이미지가 거래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결함
  나머지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최승수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2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112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전차 회의록 6쪽에 저작물명, 7쪽부터 13쪽까지 사이트명이 있어 비식별 처리하고, 정보제공청구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는 의견을 제시함

- A 위원 :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며, 저작물명과 사이트명은 비실명 처리 후 공개하고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청구는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비실명 처리 및 정보제공청구 비공개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저작물명과 사이트명은 비실명으로 처리하고 정보제공청구는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며,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건번호 제2019-78229호~79244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총 2,142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며)안건번호 제2019-78229호는 민원인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차량용 썬쉐이드를 판매하기 위해 이미지를 제작하여 차량 사진 속에 삽입하였는데, 타 사이트에서 썬쉐이드를 팔면서 본인이 제작한 이미지를 도용하고 있다고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한 사안임
  본 건 이미지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가 불명확한 점,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본 건 이미지가 현재 제공되고 있지 아니한 점, 게시자가 본 건 이미지를 스스로 삭제함으로써 저작권법 준수 안내라는 시정권고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설령 본 건 이미지에 저작물성이 인정되더라도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민원인이 저작권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본 건 이미지는 상품판매만을 위해 이용되는 것으로 본 건 이미지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검토하여 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 B 위원, A 위원 : 민원인이 권리를 주장하는 이미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민원인이 제출한 사진을 제시하면서)사진 우측 상단에서 보이는 방패 모양 이미지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차량 사진을 특정해 보여주며)민원인이 도용되

었다고 주장한 이미지는 현재 삭제되어 확인이 불가능함

- A 위원 : 전문위원이 부결로 검토한 근거를 보면 모두 수긍할 수 있으므로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B 위원 : 다른 불법복제물의 경우 게시물이 삭제되었어도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데 본 건의 경우 이미지의 저작물성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부결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7822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건번호 제2019-78230호, 78231호 웹하드 이용자가 어문저작물 '★★ ★★ ★★★ ★★★★★'를 판매한 사안임
  민원인은 신고를 하면서 '당사 계약작'이라고 적었으나, 계약서 등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음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전송하고 있으며, 해당 저작물은 현재 카카오페이지에서 유료로 판매되고 있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A 위원 : 민원인은 자신이 권리자라고 주장했지만 권리 보유 여부가 불확실함
  다만 웹하드에서 영리 목적으로 복제·전송되고 있고 합법시장에서 유료로 판매 중이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78230호, 7823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건번호 제2019-78232호는 블로그 이용자가 '●●●●●● ●●● ●●●●●● ●●●' 파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며)블로그 게시 내용에 '블로그 주인장이 실수로 국내 게임을 올리게 되면 알려달라'고 되어있어 국내 게임물은 올리지 않고 상대적으로 권리자의 관리가 약한 해외 모바일게임을 올리는 것으로 보임

  '아 주말인데 잠이 안와서 카이로 게임하나를 뜯어 보았습니다 만화가 스토리'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아 게시자가 직접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불법복제물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큼

  '코드를 졸면서 여기저기 헤집어 놓으면서 첨가물을 넣어놓았다'라는 표현을 보더라도 게시자가 게임 프로그램을 개작했다는 의미로 이해됨

  '게임이 업데이트되면 제 블로그에도 업데이트된 최신판이 올라갑니다'라는 표현과 파일 업로더와 링크 설정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면 구글 드라이브 주소를 알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업로더와 게시자는 동일인으로 보임

  게시자는 광고 수익을 얻고 있으며, 게임물 복제 및 공유를 위해 농협 후원계좌도 공개하고 있음

- A 위원 : 기존에 심의했던 링크 방식의 저작권 침해 방조와 동일한 것으로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 본 건의 경우 게시자가 구글 드라이브에 게임물 파일을 업로드하고, 심의대상 게시물에 링크를 설정한 것이어서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 부분은 검토하지 않았음
  방조는 정범인 타인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본 건에는 타인의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A 위원 : 게시물에 링크를 설정한 사람과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을 업로드한 사람, 원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프로그램을 변경한 사람이 모두 동일인으로 보인다는 취지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그렇다고 답변함

- A 위원 : 게시물 내용 중에 '건드렸다'고 되어있는데 아이템 등을 획득하기 쉽게 프로그램을 변경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어려움

- B 위원 : 첫 번째는 안드로이드 게임 앱(app)을 불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APK파일로 만든 것 자체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게임을 진행할 때 게이머가 유리하도록 내부적인 코드를 수정하여 개작을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A 위원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로 보이는데, 게임에서 능력치를 변경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는 하급심 판례 태도가 명확치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음

아무튼 전문위원 검토의견 대로 해당 게임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기 어려우므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7823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78233호~79244호는 모두 단순 복제한 음악, 컴퓨터프로그램, 게임, 만화 등을 웹하드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이용에 무단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 A 위원 : 상영 중인 영화 '알라딘' 불법복제물에 대한 심의요청이 최근 들어 많은데, 웹하드 사이트에서 얼마에 다운로드 가능한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웹하드 사이트에서는 영화 '알라딘'을 370포인트에 다운로드할 수 있음

- A 위원 : 370포인트면 어느 정도 금액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370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답변함
(다른 게시물의 '알라딘'의 자료를 제시하면서)앞서 본 게시물의 알라딘 화면과 자막이 다름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화면우측에 '■■■■■.COM'라고 되어 있

는데,해당 사이트에서 영상을 가져온 것으로 추정됨
다수의 '알라딘' 불법복제물에서 '■■■■■.COM' 마크가 보이고 있는데, 위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확인됨

- A 위원 : 데드카피이므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78233호~79244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19-78229호는 문제가 되는 이미지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가 불명확한 점, 게시자가 이미지를 스스로 삭제하여 더 이상 전송되고 있지 않는 점, 상품판매만을 위해 이미지를 이용하여 해당 이미지가 거래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결하고, 안건번호 제2019-78230호~79244호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 · 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o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12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12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8. 1.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강호갑